

## 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

[규정명 변경 2022.11.01.]

제정 2016.10.27. 개정 2017.10.23. 개정 2017.10.30. 개정 2022.11.01.  
개정 2023.09.05. 개정 2024.07.24. 개정 2025.01.2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조기취업자 또는 창업자의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11.01., 개정 2024.07.24.>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내·외 조기취업·창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 (단, 계약학과 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제외한다.) <개정 2017.10.30., 2022.11.01., 2024.07.24., 2025.01.21.>

1.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(수업연한 초과자 포함)
2.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**제3조(제출서류 및 신청절차)** ① 조기취업·창업자는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 후 취업·창업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주임교수 또는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외취업자의 경우,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)는 입사 후 30일 이내로 제출 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7.24., 2025.01.21.>

### 1. 국내취업

- 가. 조기취업자 : 조기취업·창업신청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1)
- 나. 창 업 자 : 조기취업·창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본인명의), 4대보험 가입증명서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1)

### 2. 국외취업

- 가. 조기취업자 : 재직증명서(또는 근로계약서), 해외취업비자(사본),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
- 나. 창 업 자 : 해외창업비자(사본),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

② 조기취업·창업자는 [별지서식 1호 및 2호]를 작성하여 소속 주임교수 또는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 또는 학부(과)장은 조기취업·창업 사실을 확인하여 서명 혹은 날인한 후 조기취업·창업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01., 개정 2024.07.24.>

**제4조(출석인정)** ① 제3조에 따라 취업 및 창업 증빙서류를 최종 제출한 조기취업·창업자는 근무기간을 수업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조기취업·창업자의 입사일 이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다. <개정 2017.10.23., 2017.10.30., 2022.11.01., 2023.09.05.>

② 조기취업·창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또는 퇴직, 폐업을 할 경우에는 재취업·창업 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및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01.>

**제5조(학점인정)** ① 조기취업·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 <개정 2022.11.01.>

② 조기취업·창업자의 성적평가는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른다. <개정 2022.11.01.>

**제6조(관리사항)** 조기취업·창업자의 소속 학과는 조기취업·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01.>

1. 취업 또는 창업 증빙서류 확인
2. 제4조에 의거한 출석관리
3. 학점인정 평가자료 확인 및 보관

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,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23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고,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⑦ 이 규정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